

18・19 세기 女性天皇・女系天皇論

오카와 마코토

원문은 일본어, 번역: 홍성민

시작하며

2004 년 12 월에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총리대신이 설치한 자문기관 ‘황실전범에 관한 유식자회의’는 다음 해 11 월에 ‘황위의 안정적인 계승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여성천황(女性天皇), 여계(女系)¹ 계승의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게 불가결하다.’는 결론을 내었다. 그 뒤 여성천황, 여계천황에 대해서는 언제나 시끌벅적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2019 년 5 월에는 현 천황의 퇴위와 신 천황(현 황태자)의 즉위가 이루어져서 차기 황위계승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황위계승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국민 과반수의 의식은 舊・現 황실전범의 규정이 전대까지의 역사적, 문화적 축적을 직선적으로 반영하여 결정되었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 중에서도 황위계승이 남계(男系) 황족남자로 한정되어, 여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이 전근대로부터 계속되었다고 주장하는 논설이 상당히 보인다. 이 남계 남자주의(the Agnatic Primogeniture System)야말로 일본 황위계승의 전통이라는 의견은 가십거리를 심는 주간지나 극우적인 잡지 등에서 보일 뿐만 아니라 권위적인 학자 중에서도 일찍부터 표명되어 왔다. 아라키 도시오(荒木敏夫)는 여계 여성천황 부정론자에게는 남계 남자주의가 일본의 ‘전통’이고 ‘상식’이라는 사고방식이 공통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다. 아라키가 말하였듯이 이 ‘상식’에 함정은 없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다.² 본 연구는 황위계승을 둘러싼 논의가 비학문적인 자기의견의 피력에 빠져버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천황, 여계천황이 옛 황실전범(1889 년 제정)의 성립 전후로 어떻게 연속하거나 변화되어 왔는지 그 실상의 해명을 목적으로 한다.

1. 남존여비라는 ‘전통’

그런데 상기의 문제를 고찰하기에 앞서, 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옛 황실전범(1889 년, 메이지 22 년 성립) 제 1 조에서 남계 남자계승주의의 성립에 큰 역할을 한 이노우에 고와시(井上毅)의 具申(「謹具意見」), 그 형성에 큰 영향을 끼친 오메이샤(嚶鳴社) 내부의 논쟁이다.³ 오메이샤란 원로원 대서기관인 누마 모리카즈(沼間守一)가 1878 년 (메이지 11 년)에 설립하고 신문기자, 변호사, 개명파 관리 등을 멤버로 한 대표적인 민권결사이다. 토론회,

¹ 여계천황(女系天皇)은 황녀(皇女)가 낳은 황손(皇孫)이 즉위하여 천황이 된 경우를 가리키는데 그 성별은 남성, 여성 모두가 가능하다. 여계(女系)와 여성(女性)은 다른 개념임을 주의하였으면 한다.

² 荒木敏夫, 『可能性としての女帝—女帝と王權・國家』, 青木書店, 1999 年, p.17.

³ 또한 이 논쟁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지만, 여기서는 고지마 가즈시(小嶋和司), 고바야시 히로시(小林宏), 도코로 이사오(所功) 등의 연구를 그 대표로서 들고자 한다. 小嶋和司, 「『女帝』論議」, 『小嶋和司憲法論集2』 所收, 木鐸社, 1988 年. 小林宏, 「井上毅の女帝廢止論—皇室典範第一條の成立に關して—」, 梧陰文庫研究會 編, 『明治國家形成と井上毅』 所收, 木鐸社, 1992 年. 所功, 『近現代の「女性天皇」論』, 展転社, 2001 年.

연설회의 개최, 『도쿄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東京横浜毎日新聞)』 · 『오메이 잡지(嚶鳴雜誌)』의 발행, 지방유세 등을 주요 활동내용으로 하였고, 자유민권운동에 크게 영향을 준 사의헌법(私擬憲法)의 초안을 작성하여 1882 년(메이지 15 년) 입헌개진당(立憲改進黨) 결성에 진력하였다. 「女帝를 세우는 可否」라는 제목의 오메이샤 내부의 논쟁은 1882 년 1 월 14 일에 이루어져, 3 월 14 일에서 4 월 4 일까지 도쿄 요코하마 마이니치신문에 총 9 차례 게재되었다. 왜 이 시기에 여성 천황의 是非가 문제가 되었나며는 이 논쟁이 일어나기 전 해인 1881 년(메이지 14 년) 10 월 12 일에 국회개설의 詔書가 나온 사실이 크다. 이 칙유에서 헌법개정도 이루어진다고 표명되었고, 황위계승을 어떻게 규정해 갈지가 일부 지식인들의 관심사가 되었던 것이다. 또 「女帝를 세우는 可否」 논쟁에서 발의자인 시마다 사부로(島田三郎)⁴가 자신이 남계 남자계승주의를 주장하고 여성천황을 인정하는 이하의 두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앞 부분에서 서술하였다. 여기서 이하의 시마다 등의 의견은 오카와(大川)가 현대 일본어로 고친 것이다.

첫 번째 용인론자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여성천황이 즉위해 온 ‘습관’이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남계 남자로 한정함은 이 습관을 깨트린다고 주장하는 자로, 여기에는 ‘일본 서적[國書]에 통달한 사람’이 많다. 또 두 번째는 현재는 사회가 진보하였고, 남녀의 권리가 점차 동등해져 왔다. 일찍이 왕위와 황위를 남계, 남자로 한정한 다른 나라도 헌법 제정에 따라 남녀가 똑같이 계승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남계 남자로 한정함은 10 세기 세계의 조류를 역행하는 것으로 하물며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여성천황이 즉위해 온 ‘국풍’도 있다. 이러한 주장은 ‘서양 서적[洋書]을 이해하는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난다.⁵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서양적인 인권을 이해한 ‘서양 서적을 이해하는 사람’, 즉 양학자(洋學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서양적인 남녀동권(男女同權)론과는 인연이 없는 ‘일본 서적에 통달한 사람’ 즉 국학자들도 여성천황을 용인한 점이다. 또 하나는 여성천황 용인론에서는 서양학문과 국학을 넘어서 과거에 여성천황이 즉위한⁶ 사례를 ‘관습’, ‘국풍’으로 생각하였다는

⁴ 생몰년은 1852 ~ 1923 년.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주필이다. 후에 官界에 들어갔지만 하야하고 1882 년(메이지 15 년) 입헌개진당 창립에 참가하였다. 이후 중의원 의원이 된다. 1886 년에는 세례를 받고 기독교 인도주의의 입장에서 공창(公娼) 폐지운동과 아시오 광산(足尾銅山) 피해자 구제운동에 전념하였다. 웅변가로서 알려졌으며, 시멘스 사건(シーメンス事件) 탄핵연설이 유명하다.

⁵ 「第一의 反對는 我國은 古來 女帝를 세운 慣習이 있고, 지금에 이르러 男統에 限함은 이 慣習을 破壞한다고 한다. 이 論者는 古來의 慣習을 尊重하는 자로 國書를 通하는 者에 많다. 또 第二의 反對者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現時는 社會의 風氣가 크게 열렸고, 또 昔時는 오직 武만을 숭상하는 氣運이 있지 않으므로, 따라서 體力이 뛰어난 男子의 專權을 싫어하는 論은 그 勢力을 왕성하게 하여 男女의 權利가 점차 바야흐로 평등해 지려고 한다. 예전에 男統에 限한 나라라고 하더라도今は 男女 똑같이 皇位를 繼襲하기에 이르렀다. 各國의 憲法을 通觀하니 大抵 그렇지 않음이 없다. 이는 幽谷을 나와서 喬木으로 옮겨간 者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허나 我國 홀로 이에 反하여 憲法上 皇女即位의 例를 세우지 않으려 함은 十九世紀의 氣運에 反하는 者이다. 하물며 古來 女帝立位의 國風이 있음에 있어서야! 今에 이르러 이를 끊으려 함은 이를 文明의 퇴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是類의 論은 반드시 洋書를 이해하는 자에게서 많다고 하겠다.」 (「女帝를 세우는 可否」『東京横浜毎日新聞』1882年(明治15)3月14日. 『日本近代思想大系 天皇と家族』, 岩波書店, 1988年, pp.276-277.)

⁶ 일본에서는 8 명 10 대의 여성천황이 즉위하였다.

①제 33 대 스이코(推古)천황 (재위: 592~628 년)

②제 35 대 고교쿠(皇極)천황 (재위: 642~645 년)

③제 37 대 사이메이(齊明)천황 (재위: 655~661 년) ※고교쿠(皇極)천황이 재즉위

점이다. 현재 일본이 황실전범에서 규정된 남계 남자 계승주의만이 일본의 전통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점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주의하였으면 한다. 메이지 초기의 논단에서 여성천황 용인론이 일정 정도 지지를 받은 이유는 당시의 황실사정을 고려하면 잘 알 수 있다. 메이지 천황은 5 명의 측실 사이에서 5 명의 황자와 10 명의 황녀를 낳았지만, 그 중에서 무사히 성인이 된 자는 황자 1 명, 황녀 4 명이다. 1879 년(메이지 12 년)에 태어난 하루노미야 요시히코(明宮嘉仁) 친왕(親王)은 이후 다이쇼 천황이 되지만, 친왕이 태어났을 때에는 다른 황자, 황녀는 사산되거나 요절하여서 형제자매가 없었고, 또 친왕도 병약하여 황통이 지속될 수 있을지 몹시 염려스러웠다. 이러한 상황도 있어서 여성, 여계천황의 용인론은 일정 정도 지지를 받았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오메이사 내부의 논쟁 「女帝를 세우는 可否」에서는 시마다의 위와 같은 발의 아래에서 총 16 명(이 중에서 의견이 기록된 자는 8 명) 사이에서 찬반의 토론이 전개되었는데, 논점의 중심은 황서(皇婿; 여제의 남편)의 문제, 또 하나는 남존여비 습관과의 정합성이었다. 황서에 관련된 논쟁에서는 살리카 법⁷을 채용한 영국에서조차도 황서를 들어서 왕가를 유지시키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한 고이즈카 류(肥塚龍)⁸의 의견, 한편 황서에 의한 정치지배를 염려하여 불가하다고 한 구사마 도키요시(草間時福)⁹ 등의 의견, 또 즉위한 역대 여성천황이 황서를 맞이한 예가 없고, 역대 여성천황은 모두 섭위(攝位)였다고 한 시마다 사부로(시)의 의견 등이 격렬하게 맞부딪쳤다. 본 발표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부분은 후자의 논점, 즉 남존여비 습관과의 정합성이다. 남계 남자 계승주의자인 시마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혹은 이러한 의견이 있겠다. “도리적으로 생각하면 남녀에는 원래 존비(尊卑)가 없다. 황비는 신하 중에서 뽑혀서 천황의 배우자가 되니까, 황서도 신하 중에서 뽑히는 게 어떠한 불합리함도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왜 그럴것인가? 정치는 ‘시세인정(時勢人情; 시대의 추세와 민중의 실정)’을 기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현상에는 남자를 높여서 여자 위에 둔다. 지금 설령 황서를 세우고 헌법상 여제를 가장 높은 위치에 둘 경우, 나라 전체의 실정은 제도에 의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④제 41 대 지토(持統)천황 (재위: 690~697 년)

⑤제 43 대 겐메이(元明)천황 (재위: 707~715 년)

⑥제 44 대 겐쇼(元正)천황 (재위: 715~724 년)

⑦제 46 대 고켄(孝謙)천황 (재위: 749~758 년)

⑧제 48 대 쇼토쿠(稱徳)천황 (재위: 764~770 년) ※고켄(孝謙)천황이 재즉위

⑨제 109 대 메이쇼(明正)천황 (재위: 1629~1643 년)

⑩제 117 대 고사쿠라마치(後櫻町)천황 (재위: 1762 ~1770 년)

한편, 중국에서는 則天武后 (690 年~705 年), 한반도에서는 신라에서 善德王 (재위: 632~647 년), 眞德王(재위: 647~654 년), 眞聖王(재위: 887~897 년)의 여성황제, 여왕이 즉위하였다.

⁷ Lex Salica. 본래는 프랑크 왕국의 법전을 가리키지만, 당시 일본에서는 특히 여왕 및 여계 왕의 즉위를 금한 프랑크 왕국의 왕위계승법을 가리킨다.

⁸ 생몰년은 1848 년~1920 년. 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正直)의 고이시카와(小石川) 도진샤(同人社)에 들어가서 자유사상을 배웠다. 오메이사 사원을 거쳐서 1915 년에 입헌개진당 성립과 함께 입당한 이후는 같은 당계의 정치가로서 활약하였다. 1894 년에 중의원 의원이 되고 마쓰카타(松方)·오쿠마(大隈) 내각기에 농상공부(農商務省) 광산국장, 오쿠마·이타가키(板垣) 내각기에는 도쿄부 지사를 역임하였다.

실업계에서는 슈에이사(秀英社) 감사역, 애국생명보험회사 중역, 일본 키네토폰사 사장을 역임하였다.

⁹ 생몰년은 1853 년~1932 년. 야스이 슌켄(安井息軒)·나카무라 마사나오(中村敬字)에게서 수학하였다.

1875 년에 에히메(愛媛) 현 마쓰야마 에이(松山英) 학교(마쓰야마 중학교의 전신) 교장이 되어 서양식 교육법을 실천하고, 또 『에히메(愛媛) 신문』에서 민권사상을 퍼트렸으며, 에히메 현에서 자유주의 교육의 보급·향상과 민권운동의 발전에 큰 공적을 남겼다. 오메이사의 활동을 마치고나서는 관리가 되어 오사카(大阪) 우편전신국 국장, 향로표식관리소 소장, 체신성(逓信省) 향로표식관리소 소장 등을 역임하였다.

때문에 여성천황의 상위에 다시 존위(尊位)를 차지하는 자(오카와[大川] 주: 황서를 가리킴)가 있다는 생각을 품는 것은 일본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천황의 존엄을 손상시키게 된다.¹⁰

시마다의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일본인에게 친숙한 남존여비라는 습관을 남녀동권의 ‘도리’(인권)나 법률제도보다 근본적인 요소로서 우선시한 점이다. 「女帝를 세우는可否」 논쟁을 정치하게 읽어내면 여성천황, 여계천황의 즉위를 둘러싼 제도상의 논의라기보다 근본적으로는 이 남존여비라는 습관을 어떻게 파악해야할지에 대한 부분에 역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습관, 인권, 법률의 관계를 논자가 어떻게 생각하였는가가 초점이 되었던 것이다.

시마다에게 정면에서 격렬한 비판을 가한 사람이 고이즈카 류였다.

또 논자는 “남자를 높임은 일본에서는 조상 대대로 해온 습관으로, 습관이기 때문에 폐지할 수 없다.”고 한다. 이는 보존해야 할 습관과 폐지해야 할 습관을 구별하지 않은 논이다. 생각해보라. 습관의 힘이 가장 강한 나라는 영국이다. 그러나 이 영국에서조차도 선악과 이해(利害)를 생각하지 않고 습관이니까 모두 남기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어떤 학자의 말에 “습관은 되도록이면 남기는 편이 좋다. 다만 좋지 않는 습관은 폐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습관을 존중할지 아닐지의 기준은 이게 새로운지 오래되었는지가 아니라, 이것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해를 가져다 주는가이다. 그저 옛 것을 존중하는 자는 골동품 수집가이다. 논자여! 골동품 수집가가 되지 말지어다.¹¹

남존여비는 일본의 관습이기 때문에 중시해야 한다는 시마다의 논의에 대해, 고이즈카는 관습은 소중히 해야 하지만 이를 남겨야 할지 말지는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남존여비 묵수의 부당성을 제기하였다. 관습을 존중하면서 의식적인 취사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는 영국의 보수 사상이 에드먼드 버크를 방불케 하는 발언을 고이즈카가 보여주었다. 여제 용인론자인 고이즈카와 부정론자인 시마다의 차이점은 바로 남존여비라는 습관을 대하는 방식에 있었다. 그렇지만 상기의 문장에서도 보이듯이 고이즈카는 관습 자체를 폐지하고 인권과 법률을 일방적으로 중시하는 지식인은 아니었다.

¹⁰ 「或은 말하길, 理로서 헤아리면 男女는 원래 尊卑의 別이 없으니, 皇妃는 人臣으로서 至尊에 配하고, 皇嬪는 人臣에서 나오니 원래부터 不可함이 없다고 한다. 나는 이 說에 동의할 수 없다. 어째서인가? 政治는 時勢人情을 가지고 이를 基本으로 삼지 않으면 안된다. 我國의 現狀은 男을 尊으로 삼고 이를 女子의 위에 둔다. 지금 皇嬪을 세우고 憲法上 女帝를 第一尊位에 두어도, 通國의 人情은 制度를 가지고 이를 一朝에 변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女帝의 위에 하나의 尊位를 차지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하게 됨은 日本國人이라면 피할 수 없는 바이다. 어찌 皇帝의 尊嚴을 손상시키미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女帝를 세우는可否」『東京横浜毎日新聞』1882年(明治15)3月14日。『日本近代思想大系 天皇と家族』, 岩波書店, 1988年, p.279.)

¹¹ 「또 論者は 男子를 높임은 日本 先祖 以來의 舊慣이다. 舊慣이라면 廢할 수 없다고 한다. 이 역시 남겨야 할 舊慣과 없애야 할 舊慣을 구별하지 못하는 論者이다. 論者여! 舊慣의 힘이 강함은 英國을 최고로 한다. 그러나 英國은 善惡利害의 선별없이 舊慣이라면 모두 이를 保存해야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學士의 말에 가로되, 舊慣은 가급적 保存해야한다. 허나 不正한 舊慣은 이를 廢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였다. 이는 그 까닭이 舊慣을 존중하는 기준은 新古에 의해 세움에 있지 않고, 利害에 의해 세워야 한다. 옛 것을 숭상함은 骨董家가 자주 이를 말한다. 論者は 부디 骨董論者가 되지 말지어다.」(「女帝를 세우는可否」『東京横浜毎日新聞』1882年(明治15)3月23日。『日本近代思想大系 天皇と家族』, 岩波書店, 1988, p.287.)

법률은 언제나 평평한 토지에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시험삼아 살펴보자. 아메리카 합중국은 법률제도를 세울 때, 습관이 장애가 됨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에서도 법률을 세울 때에 습관이 장애가 된 적이 있었다. 우리 일본이나 영국은 가장 습관으로 괴로워하는 나라이다. 입법자는 법률을 만들 때 습관의 실태를 관찰하고 그 나라의 풍토와 실정에 따라 법률을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들이 “일본에 여제를 세우는 제도를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것은 남녀동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다. 일본은 남성을 높이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계승 순위에서 남녀 중에 어디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는 남성을 우선하고 여성을 뒤로 하겠다. 그러나 여성이 세 명이 있던 다섯 명이 있던 결코 황위를 물려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한다. 일본에서는 남존이라는 습관이 있는 동시에 여제를 세운 습관이 있기 때문이다.¹²

democracy 의 번역어로 ‘민주주의’를 최초로 적용하였고,¹³ 강골한 자유주의자로 알려진 고이즈카지만 입법이 국민의 습관과 관계가 있고 계승순위에서는 남존여비의 영향도 여쩔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또 여제 용인론도 남녀동권의 인권 감각이 아니라, 일본에서는 예로부터 소수이기는 하지만 여성천황이 즉위한 습관을 근거로 삼는다고 말하였다. 여제의 가부를 둘러 싸시마다, 고이즈카 두 사람의 논쟁은 전근대 - 근대적, 수구 - 혁신이라는 대립이 전혀 아니다. 두 사람 모두 남녀동권이 세계적인 조류가 되었음을 이해하면서도 남존여비가 일본의 습관이었음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도리보다 습관을 우선시킨 점에서도 일치한다. 양자의 차이는 진무(神武) 천황에서 메이지(明治) 천황까지 122 대의 천황 중에서 10 대의 여성천황이 즉위한 사실에 대한 해석에서 기인한다. 10/122 는 어디까지나 예외로 다음 남성천황이 즉위하기까지의 ‘섭위’ 즉 중간의 연결로 생각해야 할까, 그렇지 않다면 문화적으로 가까운 중국이나 한반도 왕조와 비교해도 많은 10/122 는 ‘습관’으로 간주하여야 할까? 달리 말하자면 남존여비라는 ‘전통’ 속에서 여제즉위도 ‘전통’으로서 간주해야 하는지 아는지의 논쟁의 중핵으로서 존재하였다.

2. 국학자의 의견

¹² 「法律이 어찌 항상 地平 위에서 세울 수 있겠는가? 시험삼아 보자. 米合衆國은 法律制度를 세움에 舊慣舊習 때문에 방해받음이 가장 적은 나라이다. 그러나 여전히 米國 祖先이 법률을 세울 때, 多少 舊慣舊習의 불평등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 我日本과 같이 英國과 같이 가장 舊慣의 불평등에 괴로워하는 나라이다. 세상의 立法者라는 者は 法律을 세울 때, 잘 習慣의 如何를 고려하고, 其國의 風土人情에 應하여 法律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가 日本에 女帝를 세운 制를 廢해서는 안된다고 말함은 男女 間에 同等한 權을 세우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곧 日本은 男子를 높이는 風習이 있기 때문에 繼統의 順序는 男女 중에 어디를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나는 男을 앞으로 하고 女를 뒤로 해야 한다고 말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女子가 三人있거나 五人있어도 決코 九五의 位를 물려주어선 안된다고 말함에 이르러서는 단연코 이를 거부하지 않을 수 없다. 다름아니라 日本에는 男子를 높이는 風習이 있음과 同時에 女帝를 세우는 風習도 있기 때문이다.」(「女帝를 세우는 可否」『東京横浜毎日新聞』1882年(明治15)3月29日。『日本近代思想大系 天皇と家族』, 岩波書店, 1988年, p.294.)

¹³ 민주주의라는 번역어의 정착, 또는 애초에 민주주의라는 번역어가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노구치 다다히코(野口忠彦)의 일련의 연구가 유익하다. 同, 「『民主主義』は適譯か—「デモクラシー」譯語考序說」(1)~(4), 拓殖大學政治經濟研究所 編, 『政治・經濟・法律研究』12(1)(2), 13(1)(2), 2009~2011年. 同, 「譯語『民主主義』使用の一般化」, 『政治・經濟・法律研究』16(1), 2013年.

1 장에서 서술하였듯이 1889 년에 제정한 구 황실전범 제 1 조에서 남계 남자 계승주의에는 이노우에 고와시의 具申, 또 이 구신에 논리적 근거를 제공한 오메이샤 시마다 등의 주장이 그 성립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구 황실전범 성립까지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 구 황실전범은 우선 1876 년(메이지 9 년)의 제 1 차 안, 1878 년(메이지 11 년)의 제 2 차 안, 그리고 1885~6 년(메이지 18~19 년)의 제 3 차 안이 존재하였다. 이 제 3 차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황위계승이 정해져 있었다(관련 조문만 제시).

第一條 今上天皇의 자손을 제위계승의 정통으로 삼는다.

第二條 제위를 계승하는 자는 嫡長을 正으로 삼는다. 만일 太子가 있지 않을 때는 太子 男統의 후예가 있다. 太子 男統의 후예가 없을 때는 太子의 동생 혹은 그 男統의 후예가 있다. 嫡出 男統의 후예가 모두 없을 때는 庶出의 아들 및 그 男統의 후예, 親疎의 순서에 따라 들어와서 잇는다.

第三條 위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아직 帝位를 계승할 자를 얻지 못할 때는 황족이 親疎 순서에 따라 들어와서 大位를 잇는다. 만약 부득이할 때는 女統이 들어와서 이를 수 있다.

남계 남자 계승주의에 근거한 규정임은 의심할 여지도 없지만, 주목할 부분은 남계 계승후보자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계 황위계승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의 주도로 1884 년(메이지 17 년)에 설치된 제도취조국(制度取調局)이 제출한 초안 「황실제규(皇室制規)」에서는 역시 남계 남자 계승주의를 기조로 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제 1 조에서 여계 천황을 인정하였고 또 제 6 조에서는 여성 천황의 즉위도 포함시켰다(관련 조문만 제시).

第一 皇位는 男系로서 계승하기로 한다. 만약 皇族 중에서 男系가 끊어질 때는 황족 중의 女系로서 계승한다. 男女系 각각 嫡을 우선시하고 庶를 뒤로 하며, 嫡庶는 각각 長幼의 순서를 따라야 한다.

第三 皇位를 계승할 皇子가 만약 薨去했을 때는 皇孫에게 전한다.

第四 皇位를 계승할 皇子孫이 없을 때는 皇子의 형제(皇兄弟) 및 그 자손에게 전한다.

第五 황자의 형제 및 그 자손이 없을 때는 皇伯叔父 및 그 자손에게 전하고, 皇伯叔父 및 그 자손이 없을 때는 皇太伯叔父 이상 및 그 자손에게 전한다.

第六 皇族 중의 男系가 모두 끊어졌을 때는 皇女에게 전하고, 皇女가 없을 때는 다른 황족 중에게 전함을 第三, 第四, 第五條의 예를 따른다.

第七 皇女 혹은 皇統의 女系로서 황위계승을 할 때는 그 皇子에게 전하고, 만약 皇子가 없을 때는 그 皇女에게 전한다. 황녀가 없을 때는 皇族 중에서 다른 女系에게 전하고 第三, 第四, 第五條의 예를 따른다.

第十三 女帝의 夫는 皇胤으로서 臣籍에 들어간 자 안에서 皇統에 가까운 자를 맞이한다.

이상과 같이 구 황실전범 성립으로 연결되는 정부측의 초고에서는 남계 남자 계승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계천황이나 여성천황의 즉위를 인정하는 견해가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 시기 초안작성에서 중요한 소임을 맡은 것이 국헌편찬 담당[國憲編纂掛]이다. 그 중에서도 국학 그룹의 공헌은 지대하였는데, 그 중심에 있었던 자가 요코야마 요시키요(横山由清,

생물은 1826~79 년)였다. 요코야마 요시키요에 대해서는 후지타 히로마사(藤田大誠)의 노작¹⁴이 있으니, 이하의 서술도 후지타의 연구에 많이 의거하였다. 후지타의 연구를 참고하면서 약간의 사건을 덧붙이고자 한다.

요코야마 요시키요는 일본 학문[和學]을 혼마 유세이(本間游清) · 이노 히데노리(伊能穎則)에게서 와카(和歌; 일본 고유의 노래)를 여류시인이자 양모(養母)인 요코야마 게이코(横山桂子) 및 이노우에 후미오(井上文雄)에게서 배웠다. 화학강의소(和學講義所) 교수가 되었지만, 유신 후에는 메이지 신정부의 부름을 받아 쇼헤이 학교(昌平學校) 사료편수(史料編修), 대학중 조교(大學中助教)가 되었고, 더 나아가 제도국 어용 담당[制度局御用掛] 어전 편집(語箋編輯)으로서 법률제도의 정비에 힘썼다. 그 중에서 법률 편찬에 관한 경력을 후지타의 연구에 의거하여 자세하게 서술하면, 요코야마는 원로원이 설치된 다음 달인 1875 년(메이지 8 년) 5 월 24 일은 동원(同院)의 ‘편집 담당[編集掛]’, 6 월 17 일에는 ‘구전류찬 담당 겸무[舊典類纂掛兼務]’, 또 7 월 24 일에는 ‘편수와 과장’이 되었다. 그런데 ‘조사과(調査課)’에는 ‘내국부(內國部)’에서 시작하여 국학자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고전고증을 담당한 ‘편집담당[編集掛]’과 ‘외국부(外國部)’에서 시작하여 도시민권파를 중심으로 구미 각국헌법의 번역을 담당한 ‘조사담당[調査掛]’ · ‘번역담당[翻譯掛]’의 두 계통이 있었다. 게다가 후자에는 오메이샤와 관련된 인물이 많았는데 시마다 사부로도 번역담당[翻譯掛]의 대서기생(大書記生)이었다. 한 쪽은 전근대까지 일본의 전통적 학문인 국학, 또 한 쪽은 근대적인 서양학문에 근간을 두었음을 알아 두었으면 한다.

여기서 남계 남자 계승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성천황도 용인하는 초고가 존재하였음은 앞에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초고작성에는 살리카 법전을 상속관습으로 삼으면서도 여왕이 즉위한 영국과 스페인 등의 사례를 알고 있었던 ‘외국부’ 계통의 서양학 그룹의 관여가 상정된다. 그러나 시마다 사부호가 말하였듯이 여제 용인론자에는 ‘일본 서적에 통달한 사람’ 즉 국학자들도 있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그 대표 인물이 ‘내국부’ 계통의 요코야마 요시키요였다고 추측된다. 요코야마에게는 아마도 국헌편찬 담당[國憲編纂掛] 시기에 썼다고 생각되는 「繼嗣考」¹⁵라는 문서가 후지타의 연구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그 전문의 번각(翻刻)은 후지타의 저작에 게재되어 있는데¹⁶ 남계 남자 계승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繼嗣는 男統으로써 하고 女統을 後로 한다.”, “만약 男統의 繼嗣할만한 者が 끊어져서 없을 때는 女子로써 大統을 繼嗣하게 할 수 없다. 그러할 때는 그 女帝의 配偶者를 맞이하여서 그 血統을 保續하도록 한다.”고 하여 여계천황, 여성천황의 즉위를 용인하였음이 주목된다. 시마다가 비판대상으로 삼은 여계 여성 용인론의 국학자란 구체적으로는 요코야마를 가리켰을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과감하게 추론을 한다면, 시마다 사부로에게 요코야마 요시키요는 같은 조사과 안의 다른 그룹의 리더에 해당하였고, 남계 남자 계승주의만을 주장하는 자신에게는 고전고증의 성과에 입각한 여성 여계 용인론자였던 요코야마가 성가신 존재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

3. 근세와의 불연속

구 황실전범의 성립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현재에도 이어지는 황위계승의 남계 남자주의를 규정한 이노우에 고와시였지만, 그는 자설의 논거로서 오메이샤의 시마다 사부로, 누마 모리카즈들 뿐만 아니라 국학자 고나카무라 기요노리(小中村清矩)¹⁷의 의견도 참고하였다. 여계

¹⁴ 藤田大誠, 『近代國學の研究』, 弘文堂, 2007 年.

¹⁵ 萩野由之, 『和葦雜編』 1, 東京大學附屬總合圖書館所藏의 앞부분에 있다. 요코야마의 자필 稿本은 아니지만 하기노 요시유키(萩野由之)가 요코야마의 본 문서를 베껴 적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요코야마의 관계자료는 대부분 관동 대지진으로 소실되었고, 본 문서의 원본도 소재불명이 되었다.

¹⁶ 藤田, 앞의 책, pp.330-331.

¹⁷ 생몰년은 1821 년~95 년. 모토오리 우치토(本居內遠) 등에게서 국학을 배웠고 와카야마 현에서 고학관 교수(古學館教授)를 지냈다. 유신 후는 다조칸(太政官)으로 출사하였고, 大學中助教, 내무성 사사국(社寮局) 어용담당[御用掛], 도쿄대학 교수 등을 역임하였으며, 『古事類苑』의 편집에도 관여하였다. 1893 년에는 귀족원 의원이 된다.

여성천황의 가부에 대해서는 서양학 계열의 그룹 뿐만 아니라 국학 그룹도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1885 년(메이지 18 년)에 고나카무라가 쓴 「女帝考」를 이노우에가 숙독하였고, 이노우에 소장(고인 문고[梧陰文庫] 소장)의 「女帝考」에는 다음과 같은 이노우에의 필적이 있다는 사실이 고바야시 히로시(小林宏)의 논문¹⁸에서 지적하였다.

第三章 皇統

第九條 皇位를 계승함은 男系の 男子로 제한한다.

이 條의 疎證에는 또 기요노리(清矩)가 저술한 女帝考가 가장 적합하다.

이를 본다면 고나카무라의 「女帝考」는 남계 남자주의를 주장한 문서라고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女帝考」는 직접적으로 남계 남자주의를 강조한 게 아니라, 스이코(推古) 천황에서 고사쿠라마치(後櫻町) 천황까지 8명 10대의 여성천황, 더 나아가 즉위는 하지 않았지만 ‘여제’로 간주되어 온 ‘진구 황후(神功皇后; 신공황후)’, ‘이토요(飯豊) 천황(이토요 아오노 히메미코; 飯豊青皇女)’ 등 스이코 천황 이전의 여제 2명, 총 10명에 대한 사적과 고나카무라의 평이 적혀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여제’들의 즉위는 정치 정세 등에 의한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현상이고 또 차기 천황이 즉위하기까지의 중간 연결이었다고 한 고나카무라의 분석은 역대 여성천황의 즉위는 습관이 아니라 ‘섭위’로 간주해야 한다고 한 이노우에의 이론에 근거를 제공하였다.

고바야시의 논문에서는 이노우에가 일본 전통법과 유럽법 사이에서 공통항을 찾아서 이를 논리적으로 결합하여 일본 전통법의 계승이라는 명분으로 입법화하였다고 하였다.¹⁹ 물론 이노우에가 어떠한 예측도 없이 귀납법의 방법으로 공통성을 찾아내었다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황실법의 성문화(成文化)에서 남계 남자주의는 당초부터 이노우에에게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원리였으므로 실제로는 남계 남자주의를 전제로 일본의 황실 및 해외 왕조의 역사와 법률 속에서 그 근거를 찾아내 갔을 것이다. 달리 말한다면 남계 남자에 의한 황위계승을 ‘전통’이라고 할 때, 그때까지의 다양한 옛 ‘전통’은 재편되고 가공되어 갔다. 그러나 이는 범무관료였던 이노우에에게만 국한되었을까? 나는 그 뿐만 아니라 이노우에의 주장에 근거를 제공한 국학자 고나카무라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한다. 결론부터 미리 말하자면, 고나카무라의 「女帝考」에는 미토학자 아사카 단파쿠(安積澹泊)의 『大日本史贊藪』가 인용되었는데, 고나카무라는 『贊藪』 고유의 문장을 꽤나 취사선택을 하면서 인용하였으니 아사카 단파쿠가 말하려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생겨났다. 이는 종래 연구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이하 구체적으로 논증하겠지만, 아사카 단파쿠의 『大日本史贊藪』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논문²⁰에서 상세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女帝考」의 관련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논하고자 한다.

미토학에서 편찬한 『大日本史』에서 진구 황후를 本紀(天皇의 전기)가 아니라 后妃傳에 편입한 사실은 유명하지만, 종래에는 그 이유를 여성천황의 경시라고 생각하는 풍조가 강하였다. 그러나 이는 큰 잘못이다. 그렇다면 왜 진구 황후는 본기에서 제외되었는가? 아사카 단파쿠는 다음과 같이 논하였다. 추아이(仲哀) 천황 붕어 후 오진(應神) 천황은 4 세였는데, 황태자가 된 4 세에서 즉위 전인 70 세까지 황태자였던 기간은 설령 진구 황후에 의한 치세가 천황으로서 체재를 실제로 갖추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본래는 오진 천황이 곧바로 즉위해야 했으니, 진구 황후의 稱制를 ‘섭정’으로 간주한 도네리 친왕(舍人親王)의 기술은 정곡을 찌르고 있다.²¹ 즉 진구

¹⁸ 앞의 논문.

¹⁹ 앞의 논문, p.391.

²⁰ 拙稿, 「安積澹泊『大日本史贊藪』について」, 『季刊日本思想史』81号, ぺりかん社, 2014年.

²¹ 「仲哀는 不庭을 征伐하고 中道에 崩殂하였다. 皇后는 그 威武를 빼앗고 크게 六師에게 맹세하여, 신문할 괴수를 붙잡고 추종하는 무리들을 붙잡아 妖氣를 掃蕩하니 마침내 잘 병사를 옮겨서 三韓을 平定하여 不世의 勲을 세웠다. 剛明함과 雄毅함은 古今에 傑出하였다. 시호를 神功이라고 하여도 과찬이 아니었다. 仲哀가 붕어할 때 皇后는 태기가 있었다. 凱旋한 날에 皇子를 쓰쿠시(筑紫)에서 낳았다. 네

황후의 칭제문제는 황위계승에서 정식 황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구 황후가 계속 권력을 고집한 사실에 대한 비판으로, 여성멸시로 인해 진구 황후의 치세를 ‘섭정’으로 간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皇統에서 ‘정통’이란 어떠한 기준으로 결정되는가?

아사카 단파쿠는 『춘추공양전』 은원(隱元) 원년의 ‘立適以長不以賢, 立子以貴不以長’이라는 기사를 근거로 嫡子는 適夫人(正妻)의 아들 중에서 현명함과 불초함[賢不肖]을 따지지 않고 연장자를 뽑고, 그 밖에 측실의 아들이나 姪弟의 아들 사이의 서열은 나이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현명함과 불초함으로 정하며, 정치에게 아들이 있다면 서자는 아무리 뛰어나다고 할지라도 계승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²² 아사카 단파쿠의 정통론도 세계의 상속, 계승에서 일반적인 이른바 적장자계승제를 기조로 하였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舊, 現 황실전범과 같이 남계 남자의 계승만을 인정한다는 관점을 채용하지 않았는데, 아사카 단파쿠는 여성천황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적 실적이 뛰어나다면 그 즉위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관점일 갖고 있었다. “무릇 겐메이, 겐쇼 二帝는 안으로는 단결(端潔)을 행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인자한 마음을 가졌으며, 온화함은 만물에 미치고 공손함과 검소함, 어진 마음과 인자함[恭儉仁恕]은 천성에서 나왔다. 이미 물자는 풍부하고 인구는 많았으며 사해는 평안하였으니 用은 잘도 질롱(鄧隆)한 다스림을 이루었다. 이를 여자 중의 堯, 舜이라고 불리도 괜찮을 것이다. 후대의 人主가 二帝의 憂勤한 마음을 잘 체득한다면 오비르메노 무치(大日靈貴; 아마테라스 오카미[天照大神]를 가리킴 — 오카와[大川]의 주석)가 우주에 비추는 德은 만세에 걸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²³ 라고하여 겐메이, 겐쇼 두 여성천황에 대한 최대한의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고나카무라도 『贊藪』에서 겐메이(元明) 천황의 贊(논평)을 全文에 가까운 형태로 인용하면서 “이 論으로 義를 다한다면 더 첨언하지 않겠다.”고 하여 동의를 나타내었다. 『贊藪』의 겐메이 천황의 찬²⁴이란 다음과 같은 취지이다. 곧 겐메이 천황이 즉위한 이유는 황태자였던

해를 넘기자 책립하여 皇太子로 삼았으니 마침내 황위[大寶]를 차지함이 七十年이었다. 도네리(舍人) 親王이 日本書紀를 편수하여 皇后의 稱制를 적어서 攝政이라고 하였다. 이는 特筆한 것이다. 後人是 史書를 읽고도 그 義를 풀지 못하였다. 다만 그 사적만을 보고 실제로 즉위하였다고 하여서 皇統의 世次에 열거함은 또한 매우 잘못이다. 그렇지만 應神의 降誕은 仲哀의 봉어 뒤에 있다. 이는 마땅히 세워서 天子로 삼아야 할 者이지만 皇太子로 삼게 함은 도대체 어떠한 명분인가! 그를 관[樞] 앞에서 冊立하게 한다면, 곧 처음부터 仲哀의 후계[儲貳]가 된다. 봉어하여 네 해를 넘겨서 책립함은 이것이 누구의 후계가 되겠는가! 天下는 하루도 主가 없어서는 안된다. 天子를 세우지 않고 太子를 세웠다 함은 명분을 바로잡고 실상을 조사한다면 곧 이를 실제로 즉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仲哀의 氣長足姬皇后傳贊(後世 神功皇后라고 諡함)、卷七四)。『日本思想大系 近世史論集』(岩波書店、1974年)、p.74

²² 「適을 세움에 長으로서 하고 賢으로서 하지 않는다. 子를 세움에 貴로서 하고 長으로서 하지 않는다. [이것이] 옛 道이다. 혹은 諸母가 모두 같다면 곧 母는 子로서 귀해진다. 嫡母가 낳은 바 곧 子는 母로서 귀해진다. 義는 並行하여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 故로 正嫡에 子가 있다면 곧 庶子가 長이라 할지라도 세우지 못함은 또한 매우 명백하다.」(文德의 皇子惟喬親王傳贊、卷九十一。『日本思想大系 近世史論集』(岩波書店、1974年)、pp.95-96.)

여기서 ‘立子以貴不以長’의 ‘子’의 해석에 대해서는 何休, 『春秋公羊經傳解詁』에서 의거하였다. 또한 『春秋公羊經傳解詁』의 현대어역은 岩本賢司, 『春秋公羊傳何休解詁』, 汲古書院, 1993年을 참고.

²³ 『日本思想大系 近世史論集』, 岩波書店, 1974年, pp.33~34.

²⁴ 『贊에서 가로되, 文武가 봉어함에 臨하여, 聖武는 아직 어렸다. 天下는 一日도 君이 없어서는 안된다. 故로 元明에게 萬機를 攝行하도록 請하였다. 和銅 연간(708~715) 末에 이르러 聖武가 皇太子가 되었다. 나이가 이미 장성하여 마땅히 天位를 傳해야 하였다. 그러나 詔旨에서 말하길 “나이가 어려서 몽매하니

수친왕(首親王; 후의 聖武天皇)이 어렸으니, 군주는 민중을 기르고 다스리는 자인데 나이 어린 군주로는 그 책무를 완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즉위한 것으로 권세를 자신의 소유로 하려는 사심은 전혀 없었고 천리(天理)의 공(公)에 바탕을 두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고나카무라의 「女帝考」도 전대의 여제론(女帝論)을 계승한 부분이 있음은 확실하지만, 어디까지나 통치의 실적(특히 백성에 대한 선정)에 의거하여 “후대의 人主가 二帝의 憂勤한 마음을 잘 체득한다면 오비르메노 무치가 우주에 비추는 德은 만세에 걸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겐메이·겐쇼(元正) 두 천황을 가장 높게 평가한 아사카 단파쿠의 견해는 계승되지 않았다. 곧 고나카무라 - 이노우에의 계열에서는 여성천황은 어디까지나 차기 남성천황이 즉위하기까지의 ‘섭위’라는 소임이 강조되어 그 정치실적을 평가대상으로 삼은 전대까지의 사상적 흐름과는 단절되었던 것이다.

맺으며

특히 여성천황 즉위의 是非에 관해서 말하자면 여성멸시에서 이를 논하는 사람이 많이 보인다. 일찍이 법학자 요코타 고이치(横田耕一)가 여성천황 즉위를 부정하는 논의를 유형화시키면서 남계 남자주의를 ‘전통’으로 보는 논의 뿐만 아니라 여성의 공무 담당능력이 남성보다 떨어진다는 차별적인 논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²⁵ 또 우파지식인으로 부터는 고켄[孝謙(쇼토쿠; 稱德)] 천황이 승려 도쿄(道鏡)를 총애한 사실을 너무 강조하여 여성천황 부정론을 소리 높여 주장하고 있다. 하라 다케시(原武史)가 지적하였듯이²⁶ 고켄 천황과 도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측천무후와 설희의(薛懷義)와 같이 여성 정치수장에 의한 성 스캔들(사실과는 매우 다른)을 더욱 좋아하고, 또 이를 여성의 사회, 정치진출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계속 부여해 온 역사가 동아시아 세계에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북방에 미인이 있으니 세상에 견줄 이 없게 홀로 뛰어나, 한번 돌아보면 남의 성을 망치고 두 번 돌아보면 남의 나라를 망치네. 성 망치고 나라 망치는 걸 왜 모르랴마는 미인은 다시 얻기가 어렵다오(北方有佳人, 絕世而獨立, 一顧傾人城, 再顧傾人國[『漢書』孝武李夫人傳]).”와 같이, 미인에게 정신이 빠져 직무를 방기한 자는 압도적으로 남성이 많았다는 점은 역사적 사실이다. “암탉이 새벽에 울면 집안이 망한다(牝雞之晨, 惟家之索[『尚書』牧誓]).”는 잘못된 유산은 다음 세대에 계승시켜서는 안 된다. 남녀참여, 다양성이 당연한 사회 규범이 된 오늘날, ‘남존여비’라는 아직 사라지지 않은 잘못된 ‘전통’(악습)을 단호하게 끊어내고 현재 사회규범을 참조하면서 미래에도 적용 가능한 황실계승의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아직 大業을 짊어지기는 힘들다.”고 하였다. 곧 元正에게 禪位하니, 皇太子가 일반 정무[庶政]를 스스로 하기에 이른 然後에 元正이 그에게 傳하였다. 모두 天理의 공에서 나왔고 털끝만큼의 사사로움도 있지 않았다. 그 意를 생각하면 “君은 민의 司牧이니, 어찌 幼弱한 主에게 그 職을 맡게 할 수 있겠는가.” 그 天下를 공으로 하는 마음은 귀신에게 물어보아도 의심이 없다. 故로 잘 雍熙의 化를 이룬은 推古·持統의 治보다 뛰어났다. 上가 仁으로서 흠뻑 젖고 義로서 연마하는 까닭과, 下가 집집마다 넉넉하고 풍족한 까닭은 무릇 人主에게 있어서 모두 잘하기 어려운 바이다. 그러므로 母儀의 德과 君臨의 業은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겠다.”(元明天皇紀의 贊, 卷一四. 『日本思想大系 近世史論集』, 岩波書店, 1974年, pp.32-33.

²⁵ 横田耕一, 「皇室典範」, 『法律時報』 48-4, 日本評論社.

²⁶ 原武史, 『〈女帝〉の日本史』, NHK 出版新書, 2017年.